

서울특별시의회
제277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17. 11.

서울특별시의회
김광수 의원(국민의당, 노원5)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 광 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,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,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3을 신설하여 개별가구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현행 조례 제3조의 점용허가 갱신에 관한 관련 근거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